

# 해 외 출 장 보 고 서

## - 일본 산림계획제도 조사 -

### I.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우리나라 산림계획제도는 「산림기본계획(산림청)-지역산림계획(시·도지사)-산림경영계획(산림소유자)」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현장의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비율이 낮고, 산림청과 시·도지사도 형식적으로 산림계획을 작성하고 있음. 2001년 산림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산림법의 분법화가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법정 산림계획의 수립이 25개에 이르러 행정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일부 계획들은 중복되거나 또는 상충하는 사례도 있어 산림계획제도를 개선하여 계획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일본은 1951년 산림법에서 산림계획제도를 창설하여 법 개정과 함께 몇 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현재 「산림·임업기본계획-전국산림계획-지역산림계획-산림경영계획」의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 산림계획제도의 개선을 위해 일본의 정책과 운영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본 출장은 일본 산림계획제도의 정책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산림계획제도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출장 기간: 2015년 4월 7일 ~ 4월 9일 (2박 3일)

○ 출장자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산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민 경 택
산림정책연구부	초청연구원	김 명 은

○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날 짜	일 정	면 담 자	
4.7 (화)	09:00	출국(김포공항)	11:05 하네다공항 도착
	16:00	삼림총합연구소(쓰꾸바)	山田茂樹(Yamada Shigeki) 박사 -임업경영·정책연구영역장 岡 裕康(Oka Hiroyasu) 박사 細田和男(Hosoda Kazuo) 박사 佐野 真(Sano Makoto) 박사 山本伸幸(Yamamoto Nobuyuki) 박사 田村和也(Tamura Kazuya) 박사 久保田 裕史(Kubota Hirofumi) 박사 道中 哲也(Mitsunaka Tetsya) 박사
4.8 (수)	10:00	林野廳 계획과 방문 (농림수산성 본관 정문 현관)	掛部 晋(Kakebe Susumu) -임야청 삼림정비부 지도계장 土屋禎治 ( Tsuchiya Teiji) -임야청 삼림정비부 삼림조사기술전문관
	15:00	東京大學 삼림경리연구실	白石則彦(Shiraishi Norihiko) 교수
	18:00	東京大學 임정학연구실	永田 信(Nagata Shin) 교수 竹本 太郎(Takemoto Taro) 교수
4.9 (목)	12:00	업무협의	권수현 박사
	19:55	출국(하네다 공항)	22:10 김포공항 도착



## II. 출장 결과

### 1. 개요

- 일본의 산림계획제도는 1951년 창설되어 1962년 산림법 개정에서 현재와 비슷한 산림계획제도의 틀을 갖추었음. 그 뒤 1964년 임업기본법 제정, 1968년에 산림사업계획의 신설, 1974년의 임지개발허가제도 신설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름.
- 2차 대전 후 산림 황폐화의 시기에 벌채 등 산림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있었고, 그 후 산림의 황폐상황이 회복되고 경제성장기에는 벌채규제 완화가 있었음. 이처럼 경제사회의 정세를 반영한 양단의 변천을 겪었고, 1962년 이후 현재까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청으로 산림의 다면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관점으로 일본의 산림·임업에 관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의 추진 방향을 밝히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림소유자 등에게 산림사업의 지침과 규범을 밝힌 것이 산림계획제도의 기본적 사상임.
- 일본의 산림법은 크게 2개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산림계획제도와 보안림제도임.
  - 산림계획제도는 임업의 조장, 유도, 보조를 위한 수단이며, 보안림은 규제장치임.
- 산림계획은 국가가 생각하는 산림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산림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들 기능은 시장재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균형을 가리키는 지표가 없음. 이들 기능을 시장에 맡긴다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명분을 가짐. 전국산림계획은 바람직한 숲 만들기에 대한 비전과 사업계획량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임야청 예산확보의 근거자료가 됨.
- 산림계획의 의미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보조금 제도와 결합되어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 국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산림관리에 참여하는 사유림 산주에 대하여 일부 재산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조하는 명분을 가짐.

## 2. 일본 산림계획제도의 변천

- 초기의 산림계획제도는 1951년 제3차 산림법 전면개정에서 만들어졌음. 자원 조성과 산림 황폐 방지를 위하여, 적정벌기령 이하의 입목에 대한 벌채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규제에 의해 산림소유자의 임업경영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감독행정 성격이 강했음.
  - 계획 체계는 기본계획구 별로 농림대신이 5년 단위로 산림기본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상위계획으로 하여 민유림에서는 도도부현 지사가 산림구별로 산림구 시업계획(5년), 산림구 실시계획(매년)을 세움.
- 산림 황폐가 회복되고, 목재수요가 증가하며 목재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벌채규제를 완화하였고, 1962년 벌채허가제의 운용실적이나 조림실적에 의해 벌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보안림의 벌채허가제를 남겨두고, 보통림의 벌채허가제를 폐지하였음. 산림계획 체계도 지역단위 계획체계에서 농림대신이 작성하는 전국산림계획을 통해 전체 숲만들기 방향을 제시하고, 이 계획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지역산림계획을 수립하여 민유림 시업 지침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었음.
- 확대조림 실시로, 임업은 양적확대를 목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고, 임업을 산업으로 자립시키는 동시에, 임업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1964년 임업기본법이 제정되었음. 이 법에서는 「산림자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임산물 수요에 관한 장기 재검토」를 수립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산림계획이 편성되었음. 따라서 「규제」 성격에 계획적인 목재생산 등 다소 「산업진흥」 성격이 더해졌음.
- 1968년 산림법 개정에서 산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벌채나 식재의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산림사업계획 제도가 신설되었음. 산림소유자가 작성한 산림사업계획이 상위의 지역사업계획 (이후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는 보조금이나 용자 또는 세제 우대를 받을 수 있음. 산림사업계획 제도 도입과 함께 벌채 사전신고제는 폐지되고, 산림소유자의 계획 경영을 유도하는 지도행정으로 변경되었음. 또, 전국 산림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또 지역산림계획의 계획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음.

- 1974년에는 소규모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공동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지 공동산림사업계획제도가 추가되었음. 개별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공동사업계획제도는 2001년 산림법 개정까지 이어졌고, 이 시기에 지역에 따라서 민유림 면적의 80% 이상을 커버하여, 산림계획제도의 중심 역할을 하였음.
- 1960년대 중반부터 고도 경제성장, 도시화 진전 등으로 골프장, 스키장 건설 등 산지 개발이 급증하였음. 이에 수원함양, 재해방지, 환경보전 등 산림의 공익 기능 보호를 위하여 산림법에서 공익 기능이 높은 산림을 대상으로 보안림 지정을 추진함. 하지만, 보안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림에 대해서는 법률적 규제 조치가 부족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산림 이용을 규제하여 산림관리에 노력하였으나, 법률적 강제성이 없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 이러한 배경으로, 1974년 산림법 개정에서 숲의 적정 이용을 목적으로 임지개발허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안림 이외의 산림에 대해서도 적정 이용을 확보하게 되었음.
- 1970년대 중후반 오일쇼크 등의 영향으로 목재가격 상승, 엔고 현상에 의한 목재수입 증가 현상이 나타남. 1980년을 정점으로 목재가격의 하락과 임업채산성의 저하로 인해 임업 활동이 저하되었고, 벌채량 감소와 더불어 조림면적도 급속하게 감소되면서 확대조림을 통해 전개되었던 임업의 양적확대는 실질적으로 종료국면으로 접어들게 됨. 이후 산림자원 정책은 인공림의 간벌, 보호, 육성 등의 정비가 주요 과제가 됨.

- 1983년 산림법 개정으로, 전국산림계획과 지역산림계획의 내용에 간벌과 보육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음. 또 도도부현 지사가 시정촌을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산림정비를 시행하도록 하는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제도가 생겨남.
- 1991년 특정산림사업계획제도를 신설하여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서 정하는 특정사업 산림구역에서 복층림 사업, 장벌기(長伐期) 사업, 특정활엽수 육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음.
- 임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산림정비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산림의 특성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효과적인 산림 정비를 위하여, 1998년 산림정비 시정촌의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시정촌이 산림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또한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이었던 산림사업계획의 인정, 벌채 신청서의 수리, 벌채 계획의 변경과 사업 권고 등을 시정촌장에게 위임하여 도도부현 주도의 산림정비 사업이 시정촌 주도의 사업으로 바뀌게 됨.
- 산림에 대한 국민의 니즈는 다양화, 고도화되었지만, 임업의 수익성은 악화되어, 임업을 통한 산림정비의 추진이 어려워짐. 2001년 정부는 산림·임업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 이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기존의 임업기본법을 「산림·임업기본법」으로 개정하였음. 이 시기 개정에서 산림관리 접근법이 달리하게 되었는데 임업을 통한 산림정비와 공익기능을 위한 산림정비 2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이에 따라 산림법도 일부 개정되어 산림계획제도는 크게 변경되었음.
  - 첫째, 산림소유자 이외의 주체도 산림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인정하였음. 조림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1960년대부터 대부분의 산림에서 소유자 세대교체가 이루어짐. 이들은 임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 소유 임야의 경계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

가 발생함. 따라서 더 이상 산림관리를 소유자의 의식이나 책임에 의존하기 어렵게 되었고, 산림소유자를 대신하여 산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산림관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변경됨.

- 둘째, 산림소유자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작성하는 산림사업계획의 대상을 30ha 이상의 산림으로 한정함. 그때까지, 산림사업계획은 개인, 또는 단지공동산림사업계획이고, 단독 또는 복수의 산림소유자에 의한 계획적인 산림 관리 단위이며, 임지 배치 등의 장소 조건이 붙지 않았음.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을 대상으로, 일체적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산림 관리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임.
- 2009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신성장전략에서 임업을 성장산업으로 정하고, 2011년 국산재 자급률 50%를 목표로 하는 「산림·임업재생플랜」을 세워 이용 간별을 추진하게 됨. 인공림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국산재 공급량 증대를 목표로 임업사업계획을 산림경영계획으로 바꾸고, 사업의 집약화, 임도와 작업로의 기반정비, 산림조합을 선두로 하는 사업체의 본질 강화, 인재육성 등을 추진하였음.

표 1. 일본 산림계획제도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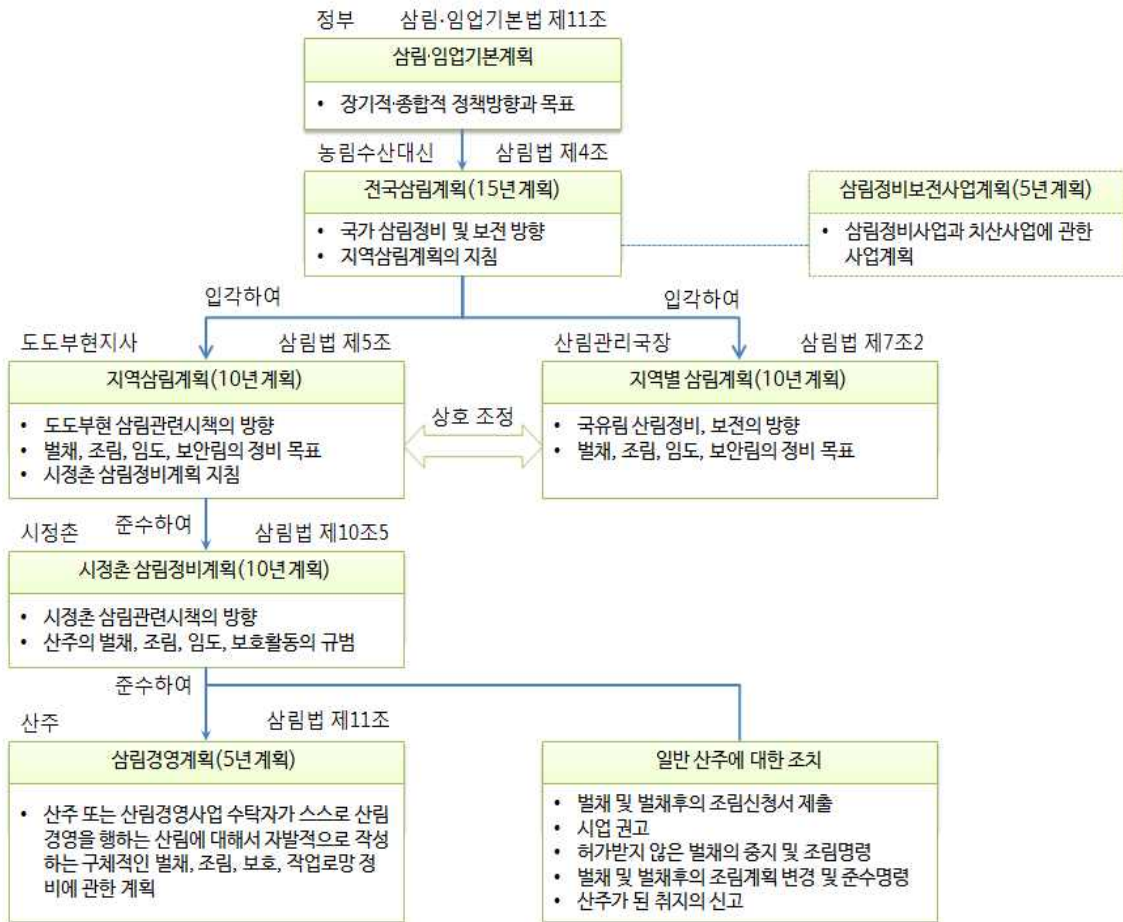
	내 용
1951년 산림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계획제도의 창설</li> <li>벌채규제강화, 보통림의 적정벌기령 미만은 벌채허가제, 그 외의 벌채는 사전신고제</li> </ul>
1962년 산림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림 벌채허가제의 폐지, 벌채신고제도의 신설</li> <li>전국산림계획-지역산림계획제도로, 지역산림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시업의 권고제도를 둠</li> </ul>
1964년 임업기본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산림계획은 임업기본법이 정한 '산림자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임산물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에 관해 책정한다.</li> </ul>
1968년 산림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소유자에 의한 산림사업계획제도를 신설</li> <li>전국산림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또 지역산림계획의 계획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li> </ul>
1974년 산림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공동산림사업계획의 신설</li> <li>임지개발허가제도의 도입</li> </ul>
1983년 산림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정촌 산림정비계획제도 신설</li> </ul>
1991년 산림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산림사업계획제도(복층림, 장벌기 시업)의 신설</li> </ul>
1998년 산림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정비 시정촌의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시정촌으로 확대</li> <li>산림사업계획의 인정, 산림사업에 관한 권한(벌채신고의 수리, 벌채계획의 변경·준수명령, 시업권고 등)을 도도부현 지사(知事)에서 시정촌장에 이양</li> </ul>
2001년 산림·임업기본법 제정 산림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정비와 임업진흥을 주축으로 하여 산림사업계획의 작성주체를 산림소유자 외에 위탁받은 산림조합도 가능하게 함.</li> <li>산림사업계획을 공통의 기능을 발군하는 30ha 이상의 단지(團地) 산림에 한정</li> </ul>
2011년 산림·임업재생플랜 산림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년 후의 목재자급을 50%를 목표로 이용간벌을 중시</li> <li>산림사업계획을 산림경영계획으로 개정하고, 속지 통합을 중시</li> </ul>

출처: 현대산림정책학(2012)

### 3. 일본 산림계획제도의 구조와 체계

- 산림·임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최상위 계획인 산림계획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아래에 산림법으로 규정된 전국산림계획, 그 아래에 유역단위의 지역산림계획이 있음. 그 아래에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이 위치하는데, 이는 지역의 산림과 임업의 마스터플랜으로 볼 수 있음.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따라 개별 산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함. <그림 1>은 산

그림 1. 일본 산림계획제도의 체계도



자료: 임야청

림법에 규정된 산림계획제도의 체계를 나타냄. 이 체계는 1998년 산림법 개정에서 모든 시정촌의 산림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산림계획제도의 작성자, 대상, 기간, 작성근거는 <표 2>와 같음.

- 정부는 산림·임업기본법에 따라 산림·임업 시책의 기본 방침, 산림의 정비·보전 목표, 임산물의 공급과 이용 목표 등에 대해, 국가의 기본 계획이 되는 「산림·임업기본계획」의 중요 항목을 책정함.
- 기본 계획에 입각하여 농림수산성 대신은 전국 44개 광역 유역에 대해, 5년마다 15년을 1기로 하는 「전국산림계획」을 세움.
- 국유림은 7개 산림관리국 단위로 전국산림계획에 기초하여 5년마다 10년

표 2. 산림계획제도의 개요

산림계획제도	작성자	대상	기간	작성근거
산림·임업기본계획	정부	전국	대략 5년 주기로 갱신	산림·임업기본법 제 11조
전국산림계획	농림수산대신	전국의 산림	15년	산림법 제 4조
지역산림계획	도도부현지사	지역 민유림	10년	산림법 제 5조
시정촌산림정비계획	시정촌	시정촌 산림	10년	산림법 제 10조 5항
산림경영계획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위탁자	소유한 산림	5년	산림법 제 11조

을 1기로 하는 「지역별 산림계획」을 작성함. 또, 민유림은 도도부현 지사가 전국산림계획에 기초하여 10년을 1기로 하는 「지역산림계획」을 공포함.

- 시정촌은 지역산림계획의 계획 사항에 따라 10년을 1기로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을 공포함. 이 계획은 시정촌 산림정책의 방향과 산림소유자의 별목과 조림 지침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산림소유자는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따라 5년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시정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산림경영계획을 세우지 않는 일반 산림소유자도 산림법에 따라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포함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산림계획제도의 체계는 국가가 수립하는 산림·임업기본계획을 광역 유역, 지역(민유림은 도도부현, 국유림은 산림관리서 단위), 시정촌, 산림소유자로 산림정비의 방향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도도부현 지역산림계획은 농림수산대신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 지역산림계획이 상위계획과 정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동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음. 사업계획량에서 2할 이내의 조정은 인정하고 있음.
  - 지역산림계획의 농림수산대신 동의획득협의에서 해당 계획량의 별채와 조림계획량이 동의기준보다 상하 20%를 넘는 경우에는 전국산림계획 수립 후의 정세변화, 별채면적과 조림면적과의 정합성, 산림자원의 보속의 관점에서 이유를 정리해야 함.

-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방법론이 있다기 보다 실무부서의 검토로 판단하고 있음.
- 여기에서 전국 산림계획과 지역 산림계획이 수량 계획인 것에 비하면 시정촌 산림정비계획과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계획은 공간계획이라는 차이가 있음.
- 지역 산림계획이 전국산림계획에 입각하여(卽して)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시정촌 산림정비계획과 산림경영계획은 상위계획에 적합하도록(適合して) 준수하여 작성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전국산림계획과 현장의 산림계획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전체 구조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담당자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도도부현의 산림 부서에는 임업직이 있지만 시정촌 산림 부서에는 행정직이나 농업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 4. 각 산림계획의 취지와 내용

##### (1) 산림·임업기본계획

- 산림·임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산림·임업기본법(1964년 법률 제 161호) 제11조에 따라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와 임업의 지속·건전한 발전을 위해 산림·임업에 관한 정책을 종합·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책정하며, 약 6~7년마다 재검토를 실시함. 20년 정도를 전망하여 정함.
- 이의 작성은 임야청 산림정비부의 실무 추진실에서 5명의 실무자가 담당하고 있음. 초안을 작성하면 임정심의회(20명)에서 수차례 검토회의를 거치고 퍼블릭 코멘트를 받아 수정하여 확정함. 최근의 산림임업기본계획은 임정심의회 5회 이후 작성된 案에 대하여 퍼블릭 코멘트 모집하고, 임정심의회를 거쳐 각의에 상정하고 국회보고를 하였음.

- 임야청 산림정비부 계획과는 임업(川上)과 목재산업(川下) 사이의 산림자원 정비에 관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는 시책에 대한 기본 방침,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 임산물 공급과 이용에 관한 목표, 산림과 임업에 관하여 정부가 종합·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 등을 정하고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산림과 임업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침
  - ① 적절한 산림 시업의 확보, 시업 집약화의 추진, 도로망 정비, 인재 육성 등 「산림·임업 재생플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지구온난화 대책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대응, 산촌 진흥 등을 추진.
  - ② 東일본 대지진의 복구를 위해 해안부 보안림의 재생, 주택, 공공시설 재건에 필요한 목재의 안정 공급, 목질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 임산물 공급과 이용에 관한 목표: 산림소유자의 산림 정비와 보전, 임업, 목재산업 등과 같은 사업 활동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와 「임산물 공급과 이용」의 목표를 설정.
  - ①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 목표는, 목재 등 생산기능 발휘가 가장 기대되는 육성 단층림을 정비하는 등 산림자원의 순환 이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익 기능의 발휘를 위해 육성 복층림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5년 후(2015년), 10년 후(2020년), 20년 후(2030년)의 산림 상태를 목표로 제시함<sup>1)</sup>.
  - ② 「임산물 공급과 이용」 목표에 대해서는 10년 후(2020년)의 총수요량을 7,800만<sup>3</sup>라고 전망하고, 국산재 공급량과 이용량 목표를 3,900만<sup>3</sup>로 제시. 수요량에서 국산재가 차지하는 비율을 50%로 전망하였음<sup>2)</sup>.

1) 100년 후 영급구성을 평준화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령림을 늘리기 위해 벌채를 늘리는 계획임.

2) 2012년 목재자급률은 27.9%임.

○ 산림·임업에 관한 정부의 종합, 계획적 시책

① 산림의 다면적 기능 발휘에 관한 시책: 면적 완성도가 있는 산림경영의 확립, 다양한 산림으로 유도,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추진.

- i. 실효성이 높은 산림계획제도의 보급·정착
- ii. 적절한 산림사업의 확보
- iii. 도로망 정비의 추진
- iv. 다양한 산림 유도와 산림의 생물 다양성 보전
- v. 지구온난화 방지와 적응 대책의 추진
- vi.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치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 vii. 야생 동물의 서식 동향에 따른 산림 피해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
- viii. 산림을 지탱하는 산촌의 진흥

②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관한 시책: 산림경영계획 작성과 이에 의한 사업의 효율적인 실행, 의욕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의 장기 위탁, 포레스터 등 산림·임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 등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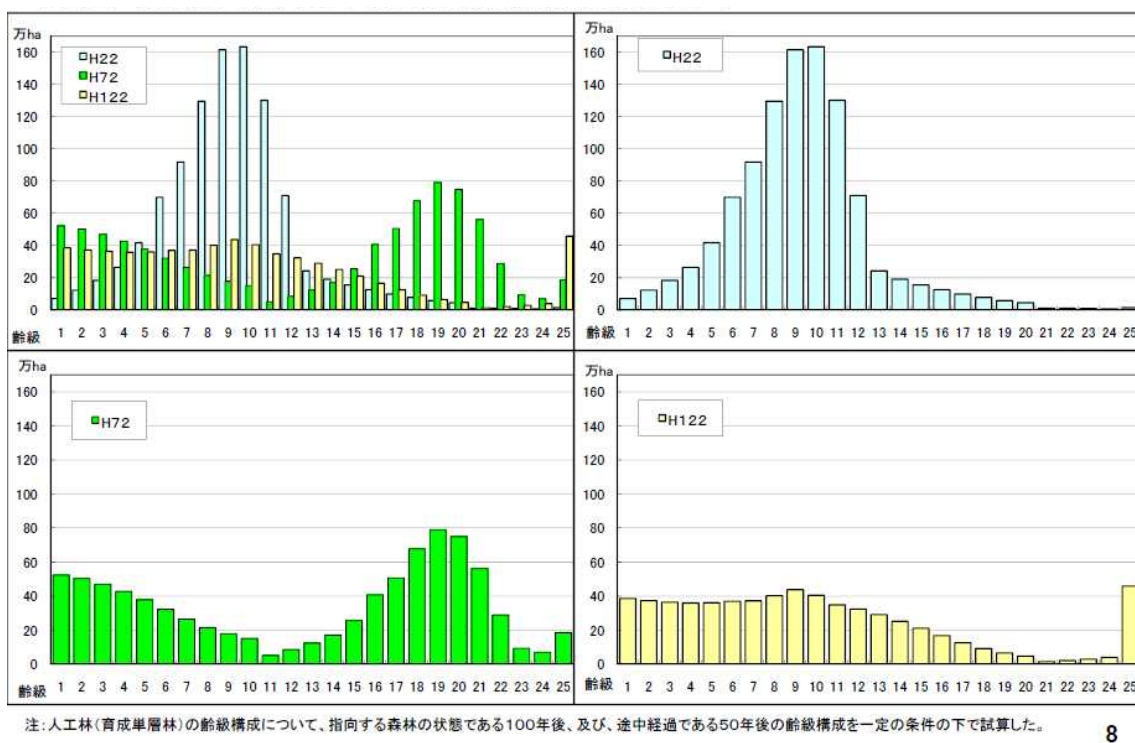
- i.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임업 경영의 육성
- ii. 사업 집약화 등의 추진
- iii. 저비용 효율적 작업 시스템의 정비·보급과 정착
- iv. 포레스터, 현장 기술자 등 인재 육성

③ 임산물 공급과 이용 확보에 관한 시책: 효율적인 가공·유통 체제의 정비, 주택 목조·목질화와 공공 건축물 등의 수요 확대에 따른 목재 이용 확대를 추진.

- i. 원목의 안정 공급 체제의 정비
- ii. 가공·유통 체제의 정비
- iii. 목재이용확대(공공건축물, 주택·토목용 자재, 목질바이오매스 등)
- iv. 목재 수출 촉진
- v. 동일본 대지진 복구 사업을 위한 목재 활용
- vi. 소비자 이해의 조성

④ 국유림 경영에 관한 시책: 공익 중시의 경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유림의 조직·기술력·자원을 활용하고, 임업기술의 개발 보급, 인재 육성을 비롯한 민유림 지원 등 일본의 산림·임업 재생에 공헌.

그림 2. 산림계획수립을 위한 장래의 영급구성 추이



8

- 산림·임업 시책을 종합·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국민 일체가 된 시책의 종합 추진, 국민 관점에서 고려한 정책 결정 실현 등.

## (2) 전국산림계획

- 전국산림계획은 「산림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이 산림·임업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전국 산림에 대해 5년마다 15년을 1기로 세우는 계획임.
  - 산림 정비와 보전의 목표로, 벌채, 입목, 재적이나 조림 면적 등의 계획량, 시업 기준 등을 밝히는 계획이며, 도도부현 지사가 작성하는 「지역 산림 계획」이나 국유림 산림관리국장이 작성하는 「국유림의 지역별 산림 계획」의 지침이 됨.
  - 2014년 4월 1일부터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전국 산림 계획이 2013년 10월에 책정됨.

- 전국산림계획은 산림의 정비와 보전 목표, 산림사업, 임도 개설, 산림토지의 보전, 보안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수계 등 자연 조건을 기본으로 산림자원의 유사성, 행정구역 등의 사회경제 조건을 고려하여 44개 광역 유역별 산림의 정비와 보전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별채, 입목, 재적, 조림 면적, 임도 개설량 등을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현행 계획의 변경(2011년) 이후의 상황 변화(국유림 사업, 일반회계 이행 등)나, 이후 더 중시되는 사항(국토강인화(强靱化))을 고려한 기술이 추가되었고, 산림 정비와 보전의 목표, 계획량에 대해서는 산림·임업기본계획의 목표에 입각하여 새로운 계획기간에 맞는 계획량을 설정하였음.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산림의 정비와 보전의 기본 생각: 산림의 다면적 기능을 강화하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자연환경의 변화, 방사능 물질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사업을 실시하고, 건전한 산림자원의 유지 조성을 추진함. 이를 위하여 산림자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림 GIS를 효과적으로 활용함. 구체적으로 유역을 기본단위로 하여, 수원함양, 산지재해 방지/토양보전, 쾌적한 환경 형성, 보건·휴양, 문화, 생물다양성 보전과 목재생산 등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산림사업의 적절한 실시, 임도 등 도로망 정비, 위탁 산림사업과 경영의 실시, 보안림 제도의 적절한 운용, 사방시설 정비, 산림병해충, 야생동물의 피해 대책 등의 산림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 산림의 기능별 산림정비와 보전의 방침은 <표 3>와 같음.
  - ② 산림 정비와 보전의 목표: 산림의 정비와 보전을 추진할 때는 「기본 생각」에 따라 각 광역 유역의 자연적, 사회경제적 특성, 산림의 공익 기능 강화에 대한 요청, 목재수요 동향, 산림의 구성 등을 배려하여 다양한 산림의 정비와 보전을 계획적으로 추진함. 현재 산림의 현황과 2029년까지 산림 정비와 보전의 목표는 <표 4>와 같음.

표 3. 산림 기능에 따른 산림정비, 보전의 기본방침

산림의 기능	산림정비와 기본 방침
수원함양기능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육·간벌과 하층 식생과 수목의 뿌리를 발달시키는 시업을 추진. 벌채에 따른 나지의 축소 분산을 도모하여 입지조건, 국민의 요구에 따른 자연의 힘을 활용한 시업을 추진
산지재해방지기능/ 토양보전 기능	재해에 강한 국토 형성을 위하여, 지형, 지질 조건을 고려하여, 임상의 나지화를 축소하는 시업을 추진하고, 입지조건, 국민의 요구에 따른 자연의 힘을 활용한 시업을 추진
쾌적 환경 형성 기능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람이나 소음 등 방비나 대기 정화에 유효한 산림 구성을 유지하고, 수종의 다양성 증진 시업, 적절한 보육·간벌을 추진
보건·휴양 기능	국민에게 휴식과 배움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입지 조건이나 국민의 요구에 따라, 활엽수를 도입하고, 다양한 산림 정비를 추진
문화 기능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형성하기 위하여 산림 정비를 추진.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원래 산림생태계, 희귀생물이 생육·서식하는 산림, 수륙경계에 위치하여 특유 생물이 생육·서식하는 산림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추진
목재 등의 생산기능	목재 등 임산물의 지속, 안정, 효율적 공급을 위해 산림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목재수요에 따른 수종, 상품성있는 임목을 생육시키기 위한 조림, 보육, 간벌을 추진

자료: [http://www.rinya.maff.go.jp/j/keikaku/sinrin\\_keikaku/pdf/keikaku.pdf](http://www.rinya.maff.go.jp/j/keikaku/sinrin_keikaku/pdf/keikaku.pdf)

표 4. 산림의 정비와 보전 목표

구분		현황 (2012년3월31일)	계획 (2029년)
임야면적 (천ha)	육성단층림	10,285	10,060
	육성복층림	1,009	1,759
	천연림	13,788	13,263

③ 산림정비에 관한 사항: 산림시업을 실시할 때는 「산림의 정비와 보전에 관한 기본 생각과 목표」를 따르며, 구체적 항목은 아래와 같음.

i. 산림의 임목죽(立木竹)의 벌채, 조림, 간벌, 보육에 관한 사항

ii. 공익적 기능별 시업 산림의 정비에 관한 사항

iii. 임도 도로망의 개설, 그 외 임산물 반출에 관한 사항

iv. 산림시업 합리화에 관한 사항: 위탁에 의한 산림시업과 경영실시, 임업종사자 양성과 확보, 작업시스템의 고도화, 유통·가공 체제의 정비, 기타

표 5. 산림 정비 항목별 계획량

구분		계획량
벌채입목재적 (만m <sup>3</sup> )	주 벌	36,184
	간 벌	43,777
	총 수	79,961
조림 면적 (천ha)	인공 조림	944
	천연 갱신	889
임도 개설량(천km)		89.9
보안림 면적(천ha)		12,951.7
간벌 면적(천ha)		7,281

주: 계획 기간(2014년 4월 1일~2029년 3월 31일)의 총량

④ 산림보전에 관한 사항

i. 산림토지의 보전에 관한 사항

ii. 보안시설에 관한 사항: 보안림 정비, 특정 보안림 정비, 치산 사업, 그 외 필요사항

iii.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⑤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보건기능과 문화기능이 높은 산림에서 해당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1989년 법률 제71호)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에 관한 기본 방침에 근거한 산림자원의 종합 이용을 촉진하고, 보건 기능 산림의 설정과 정비 방침을 정하였음.

i. 보건기능 산림의 설정 방침

ii. 보건기능 산림의 정비 방침

iii. 그 외 필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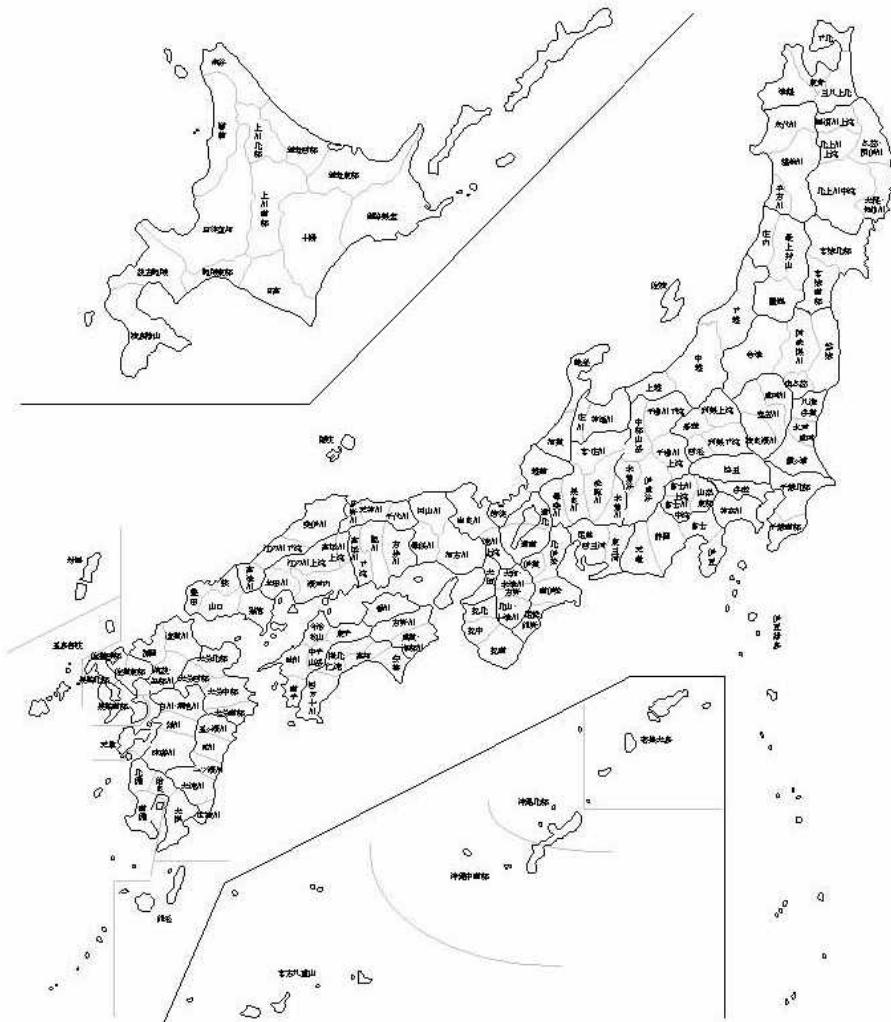
(3) 지역산림계획

○ 산림법에 의해, 도도부현 지사가 전국산림계획에 따라 민유림에 대해 산림 계획구별로 5년마다 10년을 단위로 세우는 계획. 지역산림계획의 단위인 산림계획구는 산림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농림수산대신이 각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함. <그림 3>와 같이 2015년 현재 전국에 158개 계획구가 있으며,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비슷한 조건

을 가진 지역들을 나누고 있음.

- 전국산림계획 추진을 위하여, 도도부현의 산림 시책의 방향과 지역 특성에 따른 산림 정비·보전의 목표를 밝히며, 시정촌 산림정비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림 시업과 임업경영을 실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주요 계획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대상으로 하는 산림 구역
  - ② 산림 정비와 보전에 관한 사항
  - ③ 벌채 입목 재적, 기타 산림의 입목축의 벌채에 관한 사항
  - ④ 조림면적, 기타 조림에 관한 사항
  - ⑤ 간벌 입목 재적, 기타 간벌과 보육에 관한 사항
  - ⑥ 공익 기능별 시업, 산림 정비에 관한 사항
  - ⑦ 임도 개설 등 기타 임산물 반출에 관한 사항
  - ⑧ 위탁을 받아 행하는 산림의 시업 또는 경영의 실시, 기타 산림 시업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 ⑨ 산림 보호에 관한 사항
  - ⑩ 산림의 토지 보전에 관한 사항
  - ⑪ 보안 시설에 관한 사항
  
- 또한, 「산림법」 제39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특정 보안림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보안림 정비에 관한 사항,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전국산림계획에 입각하여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 도모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기능 산림의 구역 기준, 기타 보건기능 산림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국유림에 대해서도 산림관리국장이 5년마다 10년을 단위로 「국유림의 지역별 산림계획」을 작성하며, 그 내용은 민유림의 「지역산림계획」과 비슷함.

그림 3. 산림계획구의 유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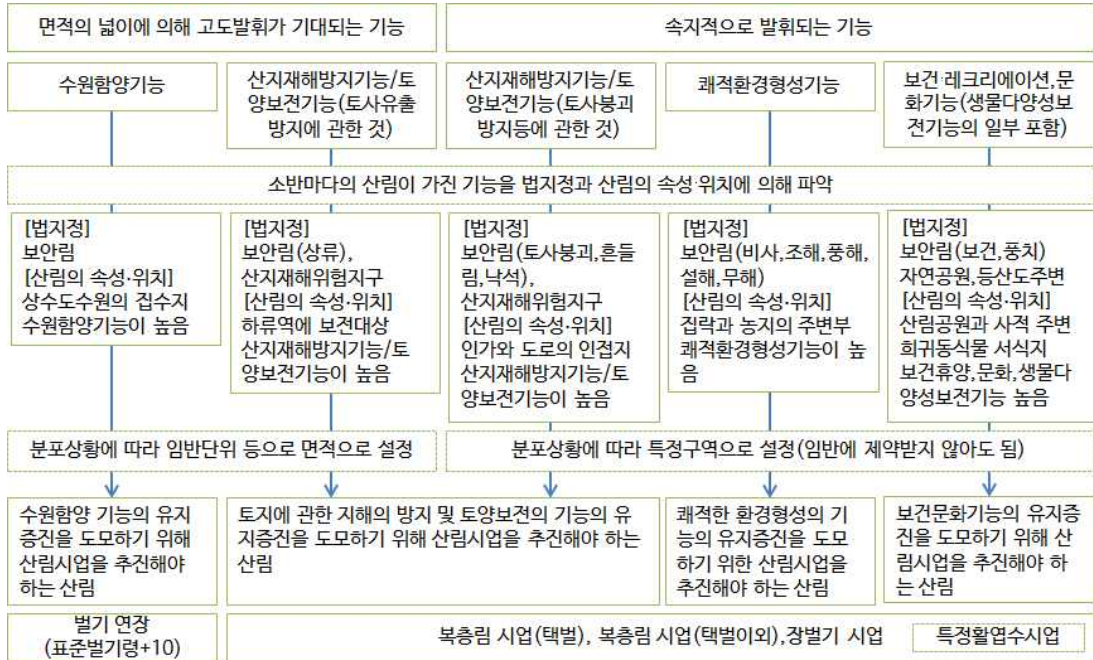
자료: [http://www.rinya.maff.go.jp/j/keikaku/sinrin\\_keikaku/pdf/shinrinkeikakuku\\_ryuuiki.pdf](http://www.rinya.maff.go.jp/j/keikaku/sinrin_keikaku/pdf/shinrinkeikakuku_ryuuiki.pdf)

#### (4) 시정촌 산림정비계획

-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은 지역산림계획의 대상이 된 민유림 소재지의 해당 시정촌이 5년마다 10년 단위로 작성함.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고, 도도부현이나 임업 관계자와 일체가 되어 관련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적절한 산림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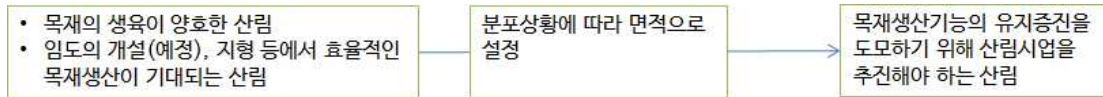
그림 4. 기능별 시업산림의 구역을 활용한 조닝의 설정

㉠공익기능별 시업산림



개별 산림에서 발휘가 요구되는 기능이 복수인 경우에는 구역이 중복되는 것도 인정됨

㉡ 목재생산기능의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시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



공익적기능별 시업산림 이외 구역=목재생산기능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업이 필요한 산림이 아니며, 산림속성에 기초하여 구역을 설정함. 공익적 기능별 시업산림과의 중복도 인정됨.

-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산림정비에 관한 기본 생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조닝, 산림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산림 시업의 표준 방법, 산림보호 등의 규범, 도로망 정비 등을 포함하여 장기 관점의 산림조성 마스터 플랜임.
  - 조닝(zoning)은 산림기능에 따라 시업제한을 두는 장치인데,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의 앞부분에 반드시 지도가 나타남.

○ 주요 계획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벌채, 조림, 보육, 기타 산림의 정비에 관한 기본적 사항
- ② 임목의 표준별기령, 벌채 표준방법, 기타 임목죽 벌목에 관한 사항
- ③ 조림 수종, 조림의 표준 방법, 기타 조림에 관한 사항

- ④ 간별 실시의 표준임령, 간별과 보육의 표준방법, 기타 간별과 보육 기준
  - ⑤ 공익기능별 시업 산림 구역 및 해당 공익 기능별 시업 산림 구역의 시업 방법, 기타 공익기능별 시업 산림 정비에 관한 사항
  - ⑥ 위탁받아 행하는 산림의 시업 또는 경영 촉진에 관한 사항
  - ⑦ 산림시업의 공동화 촉진에 관한 사항
  - ⑧ 작업로망, 기타 산림 정비에 필요한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 ⑨ 산림병해충 구제와 예방, 화재예방, 기타 산림 보호에 관한 사항
  - ⑩ 임업 종사자들의 양성과 확보에 관한 사항
  - ⑪ 산림시업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의 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 ⑫ 임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 ⑬ 기타 산림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따른 산림시업과 보호를 위하여, 산림법에 의해 아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① 벌채 및 벌채 후 조림신고 제도: 산림소유자가 임목을 벌채할 경우, 사전에 벌채와 벌채 후 조림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시정촌장은 신고가 접수된 계획에 대해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적합한 시업이 이뤄지도록 변경이나 준수를 요구할 수 있음. 무단 벌채를 한 경우에는, 시정촌장이 벌채의 중지와 조림을 요구할 수 있음.
  - ② 산림소유자 신고 제도: 2011년 4월 산림법 개정에 의해, 2012년 4월 이후 새로 산림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시정촌장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됨. 이는 벌채와 벌채 후 조림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벌목할 경우, 조림 명령, 보안림의 감독 처분 등 여러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산림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③ 시업 권고: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따라 시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촌장은 산림소유자에 대해 시업을 적절히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④ 요간벌산림제도: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따라 간벌을 적절하게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산림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풍

해, 설해, 표토유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간벌을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산림(요간벌 산림)에 대해서 시정촌장은 산림소유자가 실시해야 할 간벌의 방법과 시기를 통보하고 시업실시를 권고함. 또, 산림소유자가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도도부현 지사의 조정을 거쳐 그 재정(裁定)에 따라 시업대행을 희망하는 자에게 산림정비를 실시할 수 있음.

⑤ 산림경영계획 제도: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소유자부터 산림경영을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산림경영을 하는 일체적이고 정리된 산림을 대상으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작성하는 산림의 시업과 보호 등의 계획.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에 적합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정촌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5) 산림경영계획

○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을 위탁 받은 자가 스스로 산림경영을 실시하는 일체적이고 정리된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시업과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5년 주기로 작성함. 계획에 의해 효율적인 산림시업과 적절한 보호를 통해 다양한 산림 기능의 충분한 발휘를 목적으로 함.

- 산림경영계획은 시정촌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세제, 융자,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계획의 대상이 되는 산림

① 민유림(공유림, 국유림 분수 조림지 포함).

② 산림경영 계획에는 속지 계획(임반계획, 구역계획)과 속인계획이 있으며, 각각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③ 속지계획

- 임반계획: 임반 또는 인접하는 복수임반 면적의 1/2 이상의 규모.

- 구역계획: 시정촌장이 정하는 일정 구역의 30ha 이상의 규모.

두 계획 모두 임반과 구역에 자신이 소유한 산림이거나 산림경영을 위탁한 산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함.

④ 속인계획: 자신이 소유한 산림 면적이 100ha이상이고, 소유 산림 및

산림경영을 수탁하고 있는 산림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함.

※ 속인 계획은 산림소유자가 단독으로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동으로 작성할 수 없음.(제지회사의 경우 곳곳에 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산림에 대해 단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다는 것은 곤란한 상황임)

○ 계획의 작성자: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을 위탁받은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

- 속지계획의 경우 산림소유자가 단독으로, 산림경영 위탁을 받은 자가 단독으로, 복수의 산림소유자가 모여서 공동으로,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의 위탁을 받은 자가 공동으로, 복수의 산림경영 위탁을 받은 자가 공동으로 계획을 작성함.

○ 계획의 주요 내용

- ① 산림경영에 관한 장기 방침
- ② 계획 대상 산림의 현황, 간별과 주별의 시업 이력
- ③ 벌채(주별 간별) 조림과 보육 실시 계획
- ④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 ⑤ 산림 시업과 보호의 공동화에 관한 사항
- ⑥ 도로망 정비에 관한 사항
- ⑦ 산림경영의 규모 확대, 그에 필요한 도로망 정비 등의 목표(필요에 따라 기재)
- ⑧ 또한 그 외에,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이용 시설(산림 보건 시설) 정비를 포함한 산림의 보건기능 증진 계획을 산림경영 계획의 일부로 작성할 수 있음.

○ 인정 신청

- ① 인정 신청처: 산림경영계획의 대상 산림이 1개 시정촌 구역에 있는 경우는 시정촌장이, 복수 시정촌에 걸쳐 있을 경우는 도도부현 지사가, 복

수 도도부현에 걸쳐 있을 경우는 농림수산대신이 됨.

② 인정 신청 시기: 인정 신청처에 다음의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함.

- 시정촌의 장 : 산림경영계획의 시작 20일 전
- 도도부현 지사 : 산림경영계획 시작 30일 전
- 농림수산대신 : 산림경영계획 시작 60일 전

○ 산림경영계획의 인정요건

① 임반 계획, 구역 계획의 인정 기준 등

i. 계획대상 산림이 지형과 같은 자연 조건을 고려하여 정비를 실시하는 것(임반 계획에 대해서는 대상 산림 면적이 임반 또는 인접 복수 임반 면적의 2분의1 이상, 구역 계획에 대해서는 시정촌이 정하는 일정 구역에서 30ha 이상)일 것.

ii. 산림경영에 관한 장기 방침이 산림경영 계획의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산림경영에 유효하고 적절할 것.

iii. 산림사업 계획이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식재, 간벌 기타 사업의 실시 기준에 적합할 것.

iv.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이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의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v. 작업 도로망의 정비 상황 등에 따라 계획된 산림의 사업과 보호를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

vi. 산림 보호에 관한 사항에서 소각이 계획된 경우에 그 목적이 산림법 제21조 제2호 제1호 또는 3호에 해당되고, 시정촌장 지시에 따라 소각하는 것이 확실한 것.

vii. 산림법 제11조 제3항 산림경영의 규모 확대 목표를 정하는 경우, 지형과 기타 자연 조건을 고려하여 정비한 산림(임반)의 소유자 신청에 따라 산림경영 위탁을 받는 것이 확실한 것

② 속인 계획의 인정 기준 등

상기 ①. ii~vii에 더하여

i. 계획 대상 산림의 산림경영 상황에 따라 일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인정 신청자가 단독으로 10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

ii. 계획 대상 산림을 포함한 동일 임반의 산림소유자가 공동으로 계획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속지 계획 작성에 응할 것이 확실한 것.

iii. 법 제11조 제3항의 산림경영 규모 확대의 목표를 정한 경우에, 규칙 제1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대상 산림의 면적, 작업 도로망의 연장 기준에 적합한 것.

○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음.

① 세제상의 특례

- 소득세 : 산림 소득에 관련된 산림 계획 특별 공제
- 상속세 : 계획 별채에 관련된 상속세 연납 등의 특례
- 특별토지보유세 : 특별토지보유세 비과세.

② 금융: 일본정책금융공고 자금 대출 조건의 혜택

③ 보조금 등

- 산림환경보전 직접지원 사업(조림 보조)
- 산림정비 지역활동 지원 교부금

※ 산림경영계획의 대상 산림에서 별채, 생산된 목재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도에서 「일반 목질 바이오매스」 및 「건설 자재 폐기물」에 비해 높은 조달 가격의 구분(32엔/kwh(세금별도)이 적용됨.

(6) 일반 산림소유자에 대한 조치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지 않는 보통림 산림소유자에 대해서도 정책적 통제수단을 갖추고 있음.

- 별채 및 별채후의 조립 신고
- 시업 권고
- 무단별채에 따른 별채중지 명령, 조립 명령
- 별채 및 별채후의 조립계획 변경 준수 명령
- 산림 토지소유자가 된 취지의 신고 등

표 6. 세제의 특별조치

구분	종 류	내 용
국 세	소득세	<p>인정 산림소유자가 2009년까지 산림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입목을 벌채 또는 양도한 경우는 소득액 계산에서 다음 ①, ②에서 낮은 금액(필요경비를 개산경비에 의한 경우 ①의 금액)을 산림계획특별공제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p> <p>①입목벌채 수입액(벌출비,양도경비 제외)의 20% 상당액                  ②①의 수입액의 50%상당액에서 필요경비(벌출비,양도경비 및 산림사업계획이 정한 구역에서 관계된 재해사업용 자산의 손실액 제외)를 공제한 잔액(조세특별조치법제30조의2)</p>
	임지합리화를 위한 특별공제	<p>산림조합의 알선에 의해 임지보유합리화를 위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소득자가 가진 산림의 전부에 대해 산림사업계획의 인정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에서 800만엔을 공제할 수 있다.(조세특별조치법제34조의3)</p>
	법인세	<p>조림비 손금산입의 특례</p> <p>청색신고법인이고 인정산림소유자인 자가 2009년3월31일까지 산림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조림을 위해 지출한 조림비에 대해서는 지출한 년에 그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손금 산입할 수 있다.</p>
	상속세	<p>계획벌채 관련 상속세의 연납 등의 특례</p> <p>산림사업계획이 인정된 구역의 입목평가가 과세상당액의 10분의 2이상이고 부동산등의 비율이 10분의5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목가액에 대응한 부분의 세액은 20년(시정촌산림정비계획으로 복층림 시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 또는 장별기 시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으로서 인정된 산림에 대해서는 40년)의 범위내에 산림사업계획에 기초하여 벌채시기와 벌채재적을 기초로 분납(불균등 납부)할 수 있다.(조세특별조치법제70조의8)</p> <p>또, 연납 이자세의 경우에 다음 식에 의해 산출되는 비율이 적용된다(조세특별조치법제93조의2)</p> $\text{비율} = 1.2\% \times (\text{※공정보합} + 4.0\%) / 7.3\%$ <p>공정보합을 0.1%로 하여 시산하면 이 비율은 0.6%가 된다.</p> <p>※공정보합: 각 분납기간의 개시일에 속한 월의 2월전의 월 말일의 공정보합</p> <p>피상속인의 친족인 상속인이 상속 또는 유증을 받은 산림사업계획대상산림에 대해서 상속개시 시기부터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이어받는 산림사업계획에 기초한 시업을 계속한 경우 임지와 입목의 과세가액은 5% 감액된다.</p> <p>그리고 본 특례는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과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서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상속세에 적용되고 소규모택지 상속세의 과세가격의 계산특례, 중소기업의 자사주에 관계되는 과세가격의 계산 특례와의 선택제이다. (조세특별조치법제69조의5)</p>

		공익적기능별 사업산림의 평 가	산림법 규정에 기초하여 공익적 기능별 사업산림(수토보전림, 산림과 사람의 공생림)에 관계하는 산림사업 계획 대상림에 대해서 과세시기에서 산림사업계획에 인정되는 경우(2002년3월 이후의 인정에 한함) 그 임지와 입목에 대해서 재산평가 기본통달에 인정된 방식에 의해 평가된 가액에서 다음 구분에 따른 공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①수토보전림과 산림·사람 공생림에서 풍해방비 등을 위해 띠모양으로 잔존해야 하는 산림 20% ② 산림·사람 공생림(풍해방비를 위해 띠모양으로 잔존해야 하는 산림 제외) 40% 본 평가의 적용요건은 만족시키는 산림이고 보안림인 경우에는 공제비율이 높은 쪽만을 적용한다.
지 방 세	특별토지 보유세	특별토지보유세 의 비과세	산림사업계획의 대상임지에 대해서 특별토지보유세가 비과세됨(지방세법 제586조) 임업인에 대한 비과세 개인: 임업용으로 제공된 임지 법인: 산림사업계획대상임지 H15년부터 과세가 정지되었음

자료: [www.pref.aomori.lg.jp/rinsei/segyou\\_keikaku/sinrin-segyou-keikaku-seido-sien.pdf](http://www.pref.aomori.lg.jp/rinsei/segyou_keikaku/sinrin-segyou-keikaku-seido-sien.pdf)

표 7. 보조제도 우대조치

구분	종 류	내 용
보조사 업	산림정비사업 (조림관계보조사 업)	주요 사업에서 산림사업계획의 인정을 받은 자를 사업주체로 인정하고 동계획에 기초한 조림은 보통조림과 비교하여 보조수준의 우대조치가 적용됨 예: 보통조림의 사정계수: 90, 산림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의 사정계수는 170 (수토보전림, 자원의 순환이용림)
	산림정비지역활 동지원교부금	산림사업계획의 인정을 받은 산림소유자들에게 시정촌장과 체결하는 협정에 기초하여 산림의 현황조사 등 지역 활동을 실시한 자에 대해 사업이 필요한 산림의 면적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

주: 「보조금액=표준단가\*(1+간접비율)\*사업량(면적ha)\*사정계수/100\*보조율」의 방식으로 산정됨.  
국가와 현의 보조율은 대개 작업종에 따라 40~55%임.

자료: [www.pref.aomori.lg.jp/rinsei/segyou\\_keikaku/sinrin-segyou-keikaku-seido-sien.pdf](http://www.pref.aomori.lg.jp/rinsei/segyou_keikaku/sinrin-segyou-keikaku-seido-sien.pdf)

표 8. 용자제도 우대조치

구분	종 류	내 용
농림어업금융 공고자금	임업경영육성자금 (산림취득자금)	산림사업계획을 인정받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0.65~1.5%의 특리용자(일반 1.5%)를 받을 수 있다.
	임업기반정비자금 (조림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잔용자: 조림보조규모 10ha 이하인 계획산림에 대해서는 1.5%의 특리용자(일반 1.65%)를 받을 수 있다</li> <li>• 비보조용자: 계획산림에 대해서 1.5%의 특리용자(일반 1.5%)를 받을 수 있다.</li> </ul> <p>※계획산림: 산림사업계획, 임업경영개선계획,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요간별산림과 사업실시협정의 대상산림에 한함)의 대상이 되는 산림을 말함</p> <p>용자율은 계획산림에 대해서는 부담액의 90%(일반 80%)가 한도가 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대상임령: 산림사업계획(시정촌 산림정비계획으로 복층산림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 또는 장별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에 관계되는 부준에 한함)에 기초하여 행하는 육림 등은 임령 60년까지의 용자대상(일반 30년까지)이 된다.</li> <li>• 상환기한과 거치기한: 산림사업계획(시정촌산림정비계획으로 복층림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 또는 장별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함)에 기초한 사업으로 임업경영개선계획에 기초하는 것 등에 대해서 상환기한과 거치기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환기한(보조또는공유림) 50년이내(일반30년이내)</li> <li>-상환기한(비보조사유림) 55년이내(일반30년이내)</li> <li>-거치기간 35년이내(일반20년이내)</li> </ul> </li> </ul>
	임업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	산림사업계획을 인정받고 임업경영개선계획에 기초한 사업을 행하는 자는 해당산림사업계획에서 시정촌 산림정비계획으로 복층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 또는 장별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림으로서 지정되고 있는 산림에 관계되는 조림자금 등의 환원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자료: [www.pref.aomori.lg.jp/rinsei/segyou\\_keikaku/sinrin-segyou-keikaku-seido-sien.pdf](http://www.pref.aomori.lg.jp/rinsei/segyou_keikaku/sinrin-segyou-keikaku-seido-sien.pdf)

## 5. 기타

- 계획은 계획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현장 실태를 반영하여 국가 계획을 작성한다면 그 또한 정책기획으로서 계획의 의미를 갖지 않음.
- 산림계획제도는 임업조장을 위한 장치이기는 하나 최근 지역에 따라서 과잉벌채도 나타나고 있는데 제동을 걸 수 있는 기능은 없음.
- 일부 시정촌에는 임업 전문가가 없어서 동일한 틀에 수치만 바꾼 계획도 발견되고 있다고 함.

### Ⅲ. 기타

農林水産省 林野庁  
森林整備部 計画課 森林計画指導班

森林調査技術専門官 土屋 禎治

〒100-8952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1丁目2番1号  
電話: 03-3502-8111 内線 6144  
FAX: 03-6744-2300 Fax: 03-3593-9565  
E-mail: teiji\_tsuchiya@nm.maff.go.jp

農林水産省 林野庁 森林整備部 計画課  
海外林業協力室 海外指導班

指導係長 掛部 晋

〒100-8952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1-2-1  
TEL 03-3502-8111 (内線6146)  
TEL 03-3591-8449 (直通)  
FAX 03-3593-9565  
E-mail: susumu\_kakebuchi@maff.go.jp



独立行政法人 森林総合研究所  
林業経営・政策研究領域

領域長 山田 茂樹  
博士(農学)

〒305-8687 茨城県つくば市松の里1  
Tel: 029-829-8319; Fax: 029-873-3799  
Email: sya@affrc.go.jp



独立行政法人 森林総合研究所  
林業経営・政策研究領域

チーム長 (計量モデル担当)

岡 裕泰  
OKA Hiroyasu

〒305-8687 茨城県つくば市松の里1  
Phone: <029>829-8324  
Fax: <029>873-3799  
E-mail: oka@ffpri.affrc.go.jp



国立研究開発法人 森林総合研究所  
森林管理研究領域 チーム長 (資源評価担当)



博士 (農学) 細田 和男

〒305-8687 茨城県つくば市 松の里1番地  
TEL 029-829-8313 (直通) FAX 029-874-3720 (代表)  
E-mail: khosoda@affrc.go.jp

**YAMAMOTO Nobuyuki, Dr.**  
Chief of Forestry Socio-Economics Laboratory

Department of Forest Policy and Economics  
Forestry and Forest Products Research Institute  
1 Matsunosato, Tsukuba, Ibaraki, 305-8687 JAPAN  
Tel +81-29-829-8321 Fax +81-29-874-3720  
Email n.yamamoto@affrc.go.jp



大学院農学生命科学研究科  
森林科学専攻  
林政学研究室  
教授

教授 永田 信  
NAGATA, Shin

東京都文京区弥生1-1-1 〒113-8657  
Tel: 03-5841-5203  
Fax: 03-5841-5437  
E-mail: nagata@fr.a.u-tokyo.ac.jp



大学院農学生命科学研究科  
研究科長補佐 技術職員担当  
森林科学専攻 教授  
農学博士

白石 則彦 SHIRAIISHI, Norihiko

東京都文京区弥生1-1-1 〒113-8657  
Tel: 03-5841-5211(DI)  
Fax: 03-5841-5429  
E-mail: shiraiishi@fr.a.u-tokyo.ac.jp